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8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시공원 주차장 요금의 별도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 주차요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0조)
- 나. 도시공원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 다. 도시공원 주차장 요금 기준 마련(안 별표 4)
- 라. 그 밖에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1. 14. ~ 2. 3.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라) 소비자정책심의: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나) 경 기 도 : 정원산업과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공원내”를 “공원 내”로, “대하여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를 “대해서는 별표 4”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관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는 차량
4.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소지한 차량(인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면제)
5. 그 밖에 공익상의 필요로 시장이 주차요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타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김포시 거주자가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운전하는 차량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5.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를 제시하거나 김포스마트주차포털에 등록된 차량. 다만, 3자녀 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10.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11.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공원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공원과장 장 윤 석
	팀장 직위·성명	공원관리2팀장 박 종 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녹지주사보 조 민 우(☎4633)

[별표 4]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제30조 관련)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요금 (1구획당)	유료 운영일	유료 운영시간
최초 2시간	최초 2시간 초과 10분마다			
무료	200원	6,000원	월요일 ~ 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 ~ 22:00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무료 주차시간(2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 미만의 초과시간은 10분으로 한다.
3. 1일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부터 당일 주차장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한다.
4. 시장은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시장은 <u>공원내</u> 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u>대하여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u>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 - <u>공원 내</u> ----- -- <u>대해서는 별표 4</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30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u>공원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행(관용) 차량</u> 2. <u>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u> 3.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관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는 차량</u> 4. <u>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소지한 차량(인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면제)</u> 5. <u>그 밖에 공익상의 필요로 시장이 주차요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u> ② <u>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타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김포시 거주자가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운전하는 차량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5.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를 제시하거나 김포스마트주차포털에 등록된 차량. 다만, 3자녀 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

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
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10.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
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
접 운전하는 차량
11.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
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종료시간 2시간 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제22조(공영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지정, 지원기준 및 내용,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기본 (30분)	1구획당 10분기준	1일 요금	월정기요금			기본 (30분)	1구획당 10분기준	1일요금	월정기요금		
				주·야간	주간	야간				주·야간	주간	야간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	60,000원	-	600원	300원	7,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3,500원	-	35,000원	-	300원	100원	3,500원	50,000원	35,000원	25,000원
거주차 전용	-	-	-	30,000원	20,000원	20,000원	-	-	-	30,000원	20,000원	20,000원
버스전용	1,500원	500원	12,000원	120,000원	-	-	1,500원	500원	12,000원	120,000원	-	-

1.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단, 대궐 및 통진, 북변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2.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1급지 :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동지역

나.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김포시 지역

3. 주차시간

가. 기본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나.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2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주·야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 09: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

라. 최초 10분미만 정차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요일제 운영 등 공공·공익을 위한 추진시책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거나 번호판 등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상이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에 대하여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라.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자전거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운전하는 공무수행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단, 개인차량의 경우 관련 공문 소지시에 한함)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삭제>

자. <삭제>

차.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카.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으로서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타. 외부 시청사 및 공영주차장 입주부서·단체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해당부서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을 제시할 경우 입차 후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파.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

수증(당일에 한함)을 제출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통시장의 상인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 까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단, 월정기 주차권의 요금은 전통 시장 상인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거. 시장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대중교통환승의 목적으로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하거나 김포스마트주차포털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2자녀인 경우 최초 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주차요금의 감경 및 전액면제는 경기도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더.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러.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중소기업대상으로 지정된 다음 연도 1년으로 하고 중소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김포시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자 중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7.18.>

버.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장기 기증자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7.18.>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 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정기관 발행

가. 정기관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30미만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편익과 주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정기관의 이용기간은 3개월이며, 신청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로 추첨 등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한다.

다. 공영주차장 건물 내 입주시설 직원의 경우 월정기관 요금은 「김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7.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10>
6. “도시녹화계획”이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녹지활용계약”이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녹화계약”이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9.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10.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전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 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의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교육 및 행사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도시녹화, 정원 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김포 시민을 위한 교육 운영
7.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8. 녹화박람회 개최
9. 녹화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 체결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

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록·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9조(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하여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
-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 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 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록·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 별표 3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김포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김포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

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공원·녹지의 관리

제29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의2(공원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김포도시관리공사 또는 민간단체 등에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아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민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의하여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2년 단위로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 부실한 경우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시장은 공원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제31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1조의2(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17.11.10>

제33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

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4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6조(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김포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용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재사용 신청했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원 이용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체험료의 징수) ① 시장은 시민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체험료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 징수한다.

③ 체험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

한다.

제39조(체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제40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1. 전액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 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유족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사.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카.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3. 10퍼센트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6장 도시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

제41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당해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연수
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② 점용료 납부방법은 점용허가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실제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제44조(점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할 경우. 단, 공공단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 한다.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45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 심의
3.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자문
4.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공원도시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업무와 관련있는 시 소속 공무원
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녹지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조성업무담당이 된다.

제5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

점용대상의 종류 및 요율(제44조 관련)

점 용 대 상	요 율 안	비 고
1. 영 제2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	점용면적에 점용토지가의 10/100	
2.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설	" 3/100	
3. 영 제22조 제3호에 규정된 시설	" 6/100	
4. 영 제22조 제4호에 규정된 시설	" 3/100	
5. 영 제22조 제5호에 규정된 시설	" 6/100	
6. 영 제22조 제6호에 규정된 시설	" 10/100	
7. 영 제22조 제7호에 규정된 시설	" 10/100	
8. 영 제22조 제11호에 규정된 시설	" 3/100	
9. 영 제22조 제13호에 규정된 시설	" 6/100	
10. 영 제22조 제14호에 규정된 시설	" 10/100	
11. 영 제22조 제14호의2에 규정된 시설	" 10/100	
12. 영 제22조 제15호에 규정된 시설	" 10/100	
13. 영 제22조 제16호에 규정된 시설	" 5/100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	
14. 영 제22조제17호에 규정된 시설	" 10/100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신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장(공원과장)
(경유)

제목 2026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2026년 제1회 김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심의기간 : 2026. 3. 10.(화) ~ 3. 13.(금)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위원 : 위원장(부시장) 외 11명(전체 위원수 12명)
4. 심의결과

심의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제안부서
2026-1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도시공원 주차장 요금 기준 마련	원안가결	공원과
2026-2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관련 시설 사용료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 정비	원안가결	

붙임 심의의결서 1부. 끝.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담당자

이재근

서기

박희숙

간사

전일 2026. 3. 17.
이명란

협조자

시행

(2026. 3. 17.)

접수 공원과-3288

(2026. 3. 17.)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사우동)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5257

팩스번호 031-980-2799

/ lgwidy111@korea.kr

/ ☎공개(5)

*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면 즐거워요! *